

주택건설(또는 대지조성)사업자 등록증

(앞 쪽)

사 업 자	상 호	
	등록번호	법인등록번호
	대표자	생년월일
	영업소소재지	등록일자

「주택법」 제4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건설(또는 대지조성)사업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협 회 장



※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15조제3항에 따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※ 등록증 기재사항의 변경은 이면에 기재합니다.

(뒤 쪽)

등록사항변경 기재란